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86호
----------	--------

제출년월일 2025. 10. 10.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농어업·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김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 1조)
- 나. 용어의 정의, 김포시장의 책무 등(안 제2조 ~ 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라. 지급대상, 지급신청 등(안 제5조 ~ 안 제6조)
- 마.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 바.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11조)
- 사.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본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별첨)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6. 11. ~ 7. 2.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도 관련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지역화폐”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4.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별로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장에게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및 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읍·면·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 읍·면·동별로 각각 설치한다. 다만 읍·면·동 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읍·면·동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시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2.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인이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②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2.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각각 구성한다.

2. 읍면동위원회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은 농어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해당 지역에 대한 농어업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읍면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당연직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관련 부서장

나. 위촉직 위원: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소속 회원 등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농민기본소득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은 제9조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관 실·과·소		농업정책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농업정책과장 장 오 규
	팀 장 직위·성명	농업정책팀장 이 상 국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농업주사보 소 민 정(☎42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

- 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 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재정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하 “통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의 정책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축행복농장”이란 경기도 관내에 소재한 농장에서 가축을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가축행복농장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사육·관리되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가축행복농장 인증)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축이 사육기간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한다.

④ 가축행복농장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명품수산물의 인증) 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

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인증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 ① 농민기본소득은 19세 이상의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3.27.>
-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시 관내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심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7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지역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신청서를 첨부하여 주소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자격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농민기본소득위원회) 김포시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통, 읍·면·동, 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리·통: 농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이하 “마을위원회”라 한다)
2. 읍·면·동: 농민기본소득 읍·면·동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
3. 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

제10조(마을위원회)

- ① 마을위원회는 마을 주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리·통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리·통을 관할하는 마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마을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확인과 마을공동체규약의 제정과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③ 마을위원회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읍면동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지급대상자를 추천한다.

제11조(읍면동위원회)

① 읍면동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면·동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동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은 농민기본소득 읍면동위원회가 마을위원회 역할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읍면동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심사와 마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④ 읍면동위원회는 마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읍·면·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⑤ 시장은 읍면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3.27.>

1. 당연직 위원 : 농민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3.27.>

③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마을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⑤ 시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민기본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간 협력)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마을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급 중지 및 환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의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기준 일반농어민 7,363명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1,490명
- 일반농어민 대상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600천원으로 함
- 청년·귀농·환경농어민 대상자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1,800천원으로 함
- 연차별 계획에 따른 지원계획 산출내역(사회보장적 수혜금)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7,287,300	7,651,665	8,034,248	8,435,961	8,857,759	40,266,933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수혜금	7,100,000	7,455,000	7,827,750	8,219,138	8,630,094	39,231,982
	인건비	148,500	155,925	163,721	171,907	180,503	820,556
	운영비	38,800	40,740	42,777	44,916	47,162	214,39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법무과장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 장오규 팀장 이상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7,287,300	7,651,665	8,034,248	8,435,961	8,857,759	40,266,933	
도비보조금	3,643,650	3,825,833	4,017,124	4,217,980	4,428,880	20,133,467	
지방세수입	3,643,650	3,825,832	4,017,124	4,217,981	4,428,879	20,133,466	
세 출	7,287,300	7,651,665	8,034,248	8,435,961	8,857,759	40,266,933	
수혜금	7,100,000	7,455,000	7,827,750	8,219,138	8,630,094	39,231,982	
인건비	148,500	155,925	163,721	171,907	180,503	820,556	
운영비	38,800	40,740	42,777	44,916	47,162	214,395	
재원 조달	7,287,300	7,651,665	8,034,248	8,435,961	8,857,759	40,266,933	
의존 재원	소 계	3,643,650	3,825,833	4,017,124	4,217,980	4,428,880	20,133,467
	보조금	3,643,650	3,825,833	4,017,124	4,217,980	4,428,880	20,133,46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643,650	3,825,832	4,017,124	4,217,981	4,428,879	20,133,466
	지방세수입	3,643,650	3,825,832	4,017,124	4,217,981	4,428,879	20,133,46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